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07~ 18
----------	----------

제출연월일	2007. 7. 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에 준하는 지위로 개념을 정립함
- 나. 지원대상(안 제5조) : 군내에 거주외국인 등
- 다. 지원범위(안 제6조)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
- 라.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부터 제13조)
 - 시책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마.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안 제14조)
 -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 사. 세계인의 날(안 제16조)
 -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전후하여 1주일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며,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 아.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안 제17조, 제18조) :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 포상 또는 명예군민으로 예우함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부터 제3조·제8조·제11조·제19조·제21조

나. 그 밖에

- (1)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 반영될 예정임
- (2) 입법예고(2007. 4. 24. ~ 5. 15.)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임무) ①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국제결혼 이민자
4.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제5조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사업

②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설치)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의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거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2.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부서책임자

3.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를 자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4조(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세계인의 날) ①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군수는 제2항의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인 지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통합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 ③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거창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거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